

운영규정의 개요

기관명	나눔재가복지센터	장기요양기관번호	3-3023000192
대표자	배은화	시설장	배은화
지정일자	2018.10.02	지정형태	개인
시설정원	해당없음	시설규모	대지 301.6㎡, 건물면적 40.6㎡
기관연락처	042-936-5111	급여종류	방문요양 / 방문목욕
사업장주소	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22 1층(덕암동)		
주차시설	사무실옆이나 골목에 주차	교통편	버스: 덕암동정류장(701번, 705번, 712번, 72번) 덕마위삼거리정류장(금행2, 703번, 705번, 711번) 센터위치: 신탄진톨게이트(보니파시오 요양병원) 맞은편에 위치함.

인력현황

계	시설장	사회복지사	간호(조무)사	물리(작업)치료사	요양보호사	사무원	기타
54명	1명	2명	-	-	51명	-	-

운영목적

이용자(재가급여 대상자)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.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관한사항

계약목적

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기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의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계약기간

1.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,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2.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체결한다. 다만,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·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3. 계약기간의 만료,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

1.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[별지 1]에 따라 기관이 정한다.
2. 비급여 항목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에 따른다.
3. 그 밖의 비용부담액(기저귀, 위생용품비 등)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(보호자)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4.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5. 장기요양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급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 이용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해당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관련 법령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며,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.
6.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전 설명 및 동의를 거쳐 기관이 정한다.
7.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시 및 매년 요양 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.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. 권리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
-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
-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
-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
2. 의무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
-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-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,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.
-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설비,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계약의 해제

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체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

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

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.

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·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배상책임

1.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를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2.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관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면책범위
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.

- 서비스 제공 시간 외 발생한 사고
- 의학적 조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사고
- 가정 내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
-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발생한 사고

배상책임보험의 가입

1.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“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(이하 ‘배상책임보험’ 이라 함)” 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.
2.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.

배상책임보험

보험회사명	상품명	가입기간
한국사회복지공제회	요양기관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공제(재가)	2025-10-16 ~ 2026-10-16

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분류번호	방문요양	수가
가-1	30분	17,450
가-2	60분	25,320
가-3	90분	34,120
가-4	120분	43,430
가-5	150분	50,640
가-6	180분	57,020
가-7	210분	63,530
가-8	240분	70,080

분류번호	방문목욕	수가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8,990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80,230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재가급여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

구분	요율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9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정지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